

화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6. 8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6. 8. 16

다. 상 정 일 자 : 2006. 8. 30

(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·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도시경제과장 양정열

나. 제안사유

- 2006. 7. 12.부터 시행하는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법률」 제3조 규정에 따라 부과·징수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특별회계는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·징수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수입으로 설치·운영한다.
(안 제2조)
- 특별회계 세입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부담금과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(안 제3조)
-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하고, 징수된 부담금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한다.(안 제4조, 제5조)
- 특별회계 자금은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,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하며, 예비비 편성과 일시차입을 허용 하고, 특별회계 관리에 대한 일반적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하도록 함.(안 제6조~제10조)

○ 관계법령 :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봉훈)

○ 본 제정조례안은 2006. 7. 12부터 시행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부과·징수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

○ 기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답변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7. 붙임 : 화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